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320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호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33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12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33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 제12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의 가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6/33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7.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2021. 7.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제2항에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를 누락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므로 선행하여 위와 같이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위 공사로부터 다시 양도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26363호로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4,582,197원과 그 중 3,013,448원에 대하여는 2006.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

- 1) 피고의 부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7.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 자녀인 피고, C, H, I(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가 있는데, 피고, C은 각 2/11지분씩 망인을 공동상속 하였다.
- 2) 피고, C 등은 2018. 10. 1.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7.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C 등 망인의 상속인들이 1999. 9. 20.경 구두로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가 1999. 9. 20. 망인이 거주하던 충남 서천군 J 대 324㎡ 및 지상 주택과 인근 K 전 965㎡에 관하여 1999. 7.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는 위 지상 주택의 마당 부분이 위 J 토지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이후 세금고지서를 통하여 위 지상 주택의 마당 부분이 이 사건 1 부동산으로 별도의 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C이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2부동산은 L 종중의 소유여서 등기를 위하여는 종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바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1999. 9. 20.경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5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채권자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 및 갑 제9호증, 을 제7, 9 내지 1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 등은 2018.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협의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이고, 위 협의서에서 협의일이 2018. 10. 1.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실제 상속재산분할 협의일이라고 주장하는 1999. 9. 20.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착오로 이 사건 1 부동산이 충남 서천군 J 대 324㎡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1 부동산의 면적이 264㎡로 위 J 토지의 80%에 이르는 점, 망인은 1968년 이후 이 사건 1 부동산을 주민등록주소지로 하였고, 2018. 9. 20. 발급된 C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고의 모친 G 및 C의 주민등록주소지도 위 이 사건 1 부동산이었던 점 및 위 각 토지의 형상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이 위 J 토지의 일부로 잘못 알았다는 것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2 부동산이 종중재산인 관계로 등기를 바로 마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L 종중은 종중등록을 하였다거나, 종중 규약이나 종중의 회의록이 작성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종중에서 이 사건 2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거나, 등기필증을 관리하고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종중이 실체가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2 부동산 중 1/3지분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 C 등은 2018.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21. 4. 20.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성립되어 있었고, 피고와 C이 이 사건 1 부동산 중 2/11 지분, 이 사건 2 부동산 중 2/33지분(망인 소유 1/3 지분 $\times$ 상속지분 2/11)에 관하여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이 위 각 부동산 중 그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시기, C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망인의 부채를 변제하고, 생활비, 치료비 등을 보조하여 1억 원 이상의 기여를 하였기에 피고, C 등이 상속재산을 피고가 소유하기로 협의한 것이고, ② 피고로서는 C의 채무상태나, 재산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고, ③ C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6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증여받는 등의 특별수익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C의 구체적 상속분을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C은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으며, ④ 이 사건 2 부동산은 망인이 종중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피고, C 등은 위 신탁부동산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의 기여분 내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특별수익이나 피고의 기여분의 존재로 인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2/11)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한 C의 채무나 재산상태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그것이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몰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이 종중 소유 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 부동산이 피고가 주장하는 종중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1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2 부동산 중 2/3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2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가 이 사건 2부동산 중 6/3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상속지분은 2/11지분이므로, C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지현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남도 서천군 대 264 m²

소유자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관할

2. 충청남도 서천군 답 1694.7 m²

공유자 지분 3분의 1 지분 전부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관할 끝.

